

본인확인서 (FATCA·CRS 개인/개인사업자용)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 령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영문성명* (대문자)	성(Surname)		생년월일	
	이름(Given Name)		연락처	

*내국인 또는 모두 해당사항없는 손님은 영문 성명 필수 아님

2.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

가. 다음 중 해당되는 유형에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FATCA·CRS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FATCA	<input type="checkbox"/> 미국시민권자(이중국적자포함) <input type="checkbox"/> 미국영주권자 <input type="checkbox"/>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을 선택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 당해 연도에 31일 이상 체류하고, 과거 3년간 가중 평균하여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②	CRS	<input type="checkbox"/> 미국이외의 해외거주자	한국/미국 이외의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목적상 거주자	
③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두 해당사항없음 (①,②에 해당되지 않을경우에 선택)	내국인 또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반증증표*을 제출한 경우	
나. 가.에서 ①또는 ②에 표기한 경우 보고대상국가 및 납세자번호(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등을 작성				
보고대상국가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기재사유 선택(☑)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할 경우에만 선택)	
거주관할권*(1)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조세당국이 요구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해외영문주소				
거주관할권*(2)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조세당국이 요구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거주자증명서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 반증증표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 거주관할권 : 세법상 거주지가 속한 국가(조세협약국가)

- 거주관할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거주관할권(1), 거주관할권(2)에 해당하는 국가를 모두 기입

- 해외영문주소: 거주관할권(1)의 국가와 동일한 해외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거주관할권이 미국에 해당되나 한국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 기입)

3. 본인 확인

-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행에 통지하겠습니다.
- 본인은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인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계좌(계약)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서명)
대리인 성명 : (인/ 서명) (관계 :)

